

전기신사업자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(제5조의3제2항 관련)

위반행위	근거 법조문	처분기준	과징금 금액
1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	법 제12조 제2항제1호	등록취소	해당없음
2.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. 다만, 법 제12조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	법 제12조 제2항제2호	등록취소	해당없음
3.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	법 제12조 제2항제3호	등록취소	해당없음
4.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	법 제12조 제2항제4호	사업정지 3개월	2천만원
5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	법 제12조 제2항제5호	사업정지 1개월	1천만원
6.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	법 제12조 제2항제6호	등록취소 또는 사업정지 6개월	4천만원 (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